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의안 번호	20267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200520호)	문금주의원	2024. 6.14.	-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 제4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6.)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5.12.) 상정, 축조심사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200784호)	어기구의원	2024. 6.21.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201485호)	신정훈의원	2024. 7. 8.	-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5.12.) 상정, 축조심사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제2206445호)	안호영의원	2024.12.12.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 축 산 식 품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2026.5.12.)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5.2.7.)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210252호)	강승규의원	2025. 4.30.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 축 산 식 품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2026.5.12.)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5.6.19.)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214965호)	임미애의원	2025.12. 5.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 축 산 식 품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2026.5.12.)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5.12.15.)
농어업회의소법안 (제2217728호)	윤준병의원	2026. 3.25.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 축 산 식 품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2026.5.12.)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6.4.9.)

가.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5.12.)

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 농어업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기본원칙(안 제3조)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7조)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9조 및 제10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5조)

-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 산지, 사업장, 어장 또는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총회(안 제22조 및 제23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회장 및 대의원의 선거·해산·회원의 제명·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함.

바.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선거 및 임기(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체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8조 및 제39조)

-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 2)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아.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42조)

-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 2)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시·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자.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안 제46조)

- 1)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부회장 및 청년 또는 여성대의원으로 함.
- 2)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차. 경비 지원(안 제50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증진을 위해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안 제57조)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하여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거나,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어업회의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회의소”란 농림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농어업회의소는 운영에 있어서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정자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가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법인격 등) ① 농어업회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② 농어업회의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③ 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6조(명칭) ① 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초농어업회의소: 기초농어업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할 것.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가 개별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로 구분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광역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할 것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농어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어업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업무) 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 증진을 위한 업무
2.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3.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5.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영리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부대(附帶)되는 업무

제8조(정치적 중립) ① 농어업회의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농어업회의소는 공직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기초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제9조(관할구역)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1. 특별자치시
2. 시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

4. 군

5.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둘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10조(설립인가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

15조제2항에 따른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행정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초어업회의소의 개별설립)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어업인 2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어업인 200명 이상 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어업인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기

초어업회의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설립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기초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와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설립등기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 성명 및 주소

③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정관)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관할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8.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0. 회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해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

제15조(회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 산지, 사업장, 어장 또는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5.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시·행정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속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

7.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시·군·구에 속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단체

제16조(회원의 가입)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해당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자격을 가진 자의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기초농어업회의소(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설립된 기초어업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제27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②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탈퇴) ①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3. 파산한 경우(단체회원에 한한다)
4.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제20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부 의무와 그 밖에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조(회원 대장)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에게 회원 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기관

제22조(총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회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

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회장, 대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의 제명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사 등)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

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는 회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회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회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일반대의원과 단체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 대의원총회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④ 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이 대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정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일반대의원과 단체대의원의 정원수를 각각 구분하여 정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단체대의원의 정원이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 읍·면·동별 회원 수를 고려하여 대의원의 정원을 정하되, 읍·면·동별로 대의원의 정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여성인 대의원이 일반대의원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인

대의원이 일반대의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27조(대의원의 선거) ①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일반회원이 선출하고,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단체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일반대의원 또는 단체대의원 각 재적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결원인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일반대의원 또는 단체대의원 각 재적정원 중 결원이 5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거와 보궐선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일반대의원의 자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일반대의원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일반대의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직된다.

제30조(대의원의 해임) ① 회원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대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대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의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해임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회원”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제31조(단체회원·단체대의원의 대표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나 단체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단체회원 또는 단체대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인 사람

3.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 또는 단체대의원의 대표자인 사람

③ 단체회원 또는 단체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임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일반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의 자격제한과 당연면직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대의원”은 “회장”으로 본다.

제33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단체대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단체의 임원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단체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회원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임원”으로 본다.

④ 임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해임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회원”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제3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대표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정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35조(이사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안건을 적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④ 이사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 ⑥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변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37조(사무국)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광역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제38조(관할구역) 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1. 특별시
2. 통합특별시
3. 광역시
4. 도
5. 특별자치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둘 이상의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9조(설립인가 등) ①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대상구역”이라 한다) 수의 5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전체 관할대상구역 수의 과반수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초어업회의소가 개별설립된 경우 관할대상구역 수는 기존 관할대상구역 수에 기초어업회의소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여건 등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설립된 기초어업회의소를 포함한다)의 해산으로 인해 제39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1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 등, 정관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총회”

는 “대의원총회”로 보고, 제13조제1항제8호 중 “총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제2절 회원

제42조(회원)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1.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2.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시·도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
3.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시·도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해당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단체

제43조(탈퇴) ① 회원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해산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제44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의 가입,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 제명과 권리 제한 및 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제3절 기관

제45조(대의원총회)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② 대의원총회는 일반대의원과 단체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결사항 및 의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46조(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 ①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설립된 기초어업회의소를 포함한다)별로 총 3인(회장, 부회장, 청년 또는 여성대의원)으로 한다.

② 단체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단체회원이 선출한다.

④ 단체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단체대의원 재적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결원인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단체대의원 재적정원 중 결원이 5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단체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대의원의 선출, 보궐선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임원)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일반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의 자격제한 등, 해임, 대표자, 임원의 당연퇴임 등, 임원의 직무, 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사무국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제4항을 제외한다)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회원”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제4장 보칙

제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농어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회원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揭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0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증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자, 농어업회의소 등에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농어업회의소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회의소(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농어업회의소의 업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농어업회의소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업무를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 수행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료)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회의소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민법」의 준용) 농어업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9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의소가 아닌 자가 그 명칭 중에 “농어업회의소”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

한 경우

2. 제16조제2항(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② 농어업회의소의 임직원이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

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일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제1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
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
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